지방세(시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
(은평구·송파구)

2017. 5.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자치구의 지방세(시세) 부과·징수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은평구청, 송파구청

❍ 감사기간 : 2016.12.23.~2017.1.25.(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감사3팀장 등 6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 감사범위 : 2012년 이후 처리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중점

❍ 취득세 등 과소·미신고 및 법인의 중과세 누락 여부

❍ 취득세 등 감면 적정 여부

❍ 지방세 감면·체납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 여부

❍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 부과징수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감 액						
30	16	2,029,723			25 (2,029,723)	25 (2,026,229)	- (3,494)	 (16)			5		1 (3)

※ 지적사항 총 건수에는 모범사례 건수 미포함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

연번	감사분야	관련부서	지적내용	처분요구			조치현황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엔)	
01	취득세 중과 분야	은평구 세무1과 서울시 세무과	법인 취득부동산 중과세 추징 누락 ((주)A)	시정요구 통보	추징	59,130	완료
02		은평구 세무1과	법인 취득부동산 중과세 추징 누락 ((주)B)	시정요구	추징	8,926	완료
03	취득세 일반 분야	은평구 세무1과 송파구 세무1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갑 외 4)	시정요구	추징	21,804	완료
04		은평구 세무1과 송파구 세무1과	증축·대수선·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병 외 11)	시정요구	추징	12,384	완료
05		은평구 세무1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무 외 11)	시정요구	추징	8,719	완료
06		송파구 세무1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기 외 10)	시정요구	추징	246,022	완료
07		송파구 세무2과	기계장비 과세표준 누락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징수((주)D 외 4)	시정요구	추징	16,168	완료
08	감면 분야	은평구 세무1과	종교단체 토지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E)	시정요구	추징	296,835	완료
09		은평구 세무1과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F)	시정요구	추징	6,073	완료
10		은평구 세무1과	학교법인 부동산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G)	시정요구	추징	283,386	완료
11		송파구 세무1과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H)	시정요구	추징	12,420	완료
12	재산세 분야	송파구 세무1과	재산세 세율 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징수(I)	시정요구	추징, 감액	10,195	완료
13	주민세 분야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행정과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주)J 외 20)	시정요구	추징	5,846	완료
14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행정과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K 외 5)	시정요구	추징	39,673	완료
15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행정과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주)M 외 206)	시정요구	추징	14,188	완료
16	지방소득세 분야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2과 서울시 세무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주)O 외 21)	시정요구 통보	추징	539,437	완료
17		송파구 세무2과 서울시 세무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미부과 (임 외 6)	시정요구 통보	추징	11,523	완료
18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2과 서울시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주)Q 외 49)	시정요구 통보	추징	436,994	완료
19	모범사례 분야	송파구 세무1과	적극행정을 통한 취득세 등 추징으로 세수증대 기여	통보	-	-	진행중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현황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1과 서울시 세무과	2017 (2017.3.)	시정요구 통보	추징	59,129,860원	1	
제 목	법인 취득부동산 중과세 추징 누락((주)A)					

【 지적내용 】

❍ 은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에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인 1천분의 80[1]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A는 ’08. 3. 5. 강원도에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로 전입하고, 같은 해 7. 7. 경기도 고양시(대도시)로 전출한 후 ’12. 12. 21. 은평구 소재 토지 303.3㎡와 같은 구 소재 토지 55.17㎡를 770,193,330원에 취득하면서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1) (40/1,000×300/100)-(20/1,000×200/100) = 80/1,000

- 위 토지의 취득은 해당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08. 3. 5.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세를 1천분의 80으로 부과하는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은평구에서는 ㈜A가 위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법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61,615,46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40으로 산출한 30,807,730원을 신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부과·징수하였다.

❍ 그 결과 은평구는 '17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30,807,730원 등 계 59,129,860원(가산세 포함)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징세액

(2017. 1. 10. 기준, 단위 : 원)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59,129,860	36,969,270	22,160,590

【 조치할 사항 】

❍ **은평구청장은**

-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A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 계 59,129,86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세무과장은**

- 취득세 중과세 누락 방지를 위해 '13. 6. 28. 취득세 신고사항관련 내용 입력란에 "법인설립일자" 항목을 추가하여 중과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세무종합시스템 매뉴얼에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 법인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취득과 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해 중과세를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전입일자"가 필요하나, "법인설립일자"란에 "법인전입일자"를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 '13. 6. 28. 개선사항을 세무종합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반영하고 "법인설립일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8,926,350원	1	

제 목	법인 취득부동산 중과세 제외 후 추징 누락((주)B)

【 지적내용 】

❍ 은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표준세율(1천분의 10)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인 1천분의 50[2]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중과세율인 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10. 3. 12. 서울시 중구에서 설립된 ㈜B가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인 ’14. 7. 31. 은평구 소재 부동산을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61,000,000원에

2) 10/1,000 + (20/1,000×200/100) = 50/1,000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 해당 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5. 10. 6.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중과세율인 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족세액 6,440,00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은평구에서는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은평구는 '17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6,440,000원 등 계 8,926,350원(가산세 포함)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하였다.

[표] 취득세 등 추징세액

(2017. 1. 10. 기준, 단위 : 원)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8,926,350	6,762,000	2,164,350

【 조치할 사항 】

❍ **은평구청장은**

-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B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 계 8,926,35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1과 송파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21,804,340원	2	

제 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갑 외 4)

【 지적내용 】

❍ 은평구와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20조,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은평구의 경우

❍ 갑이 ’15. 7. 22. 은평구 소재 “임야” 319㎡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후, 자진신고 납부기간(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6,638,9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은평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납세의무자 3명(법인 포함)이 지목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계 9,185,3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총괄표(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명, 건, ㎡, 원)

납세의무자 수	미부과건수	면적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3	3	1,027.2	**9,185,300**	6,929,690	2,255,610

나. 송파구의 경우

❍ 을이 '13. 7. 5. 송파구 소재 "답" 100㎡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후, 자진신고 납부기간(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8,708,71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송파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납세의무자 2명이 지목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계 12,619,0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총괄표(송파구)

(2017. 1. 10. 기준, 단위 : 명, 건, ㎡, 원)

납세의무자 수	미부과건수	면적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2	3	144	**12,619,040**	8,144,920	4,474,120

【조치할 사항】

❍ **은평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은평구)"상의 취득세 등 계 9,185,300(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송파구)"상의 취득세 등 계 12,619,040(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지목변경일자	과세물건	변경전	변경후	면적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3명						**9,185,300**	**6,929,690**	**2,255,610**
1	-	2015.07.22.	은평구	임야	대지	319	6,638,950	5,010,850	1,628,100
2	-	2016.04.19.	은평구	도로	대지	33.4	1,462,470	1,176,560	285,910
3	-	2014.04.28.	은평구	주유소	대지	674.8	1,083,880	742,280	341,600

[별표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송파구)

(2017. 1. 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지목변경일자	과세물건	변경전	변경후	면적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2명						**12,619,040**	**8,144,920**	**4,474,120**
1	-	2013.07.05.	송파구	답	대지	100	8,708,710	5,621,000	3,087,710
2		2013.07.05.	송파구	답	대지	8	696,690	449,680	247,010
3	-	2013.07.05.	송파구	전	대지	36	3,213,640	2,074,240	1,139,400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1과 송파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12,383,970원	-	

제 목	증축·대수선·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병 외 11)

【 지적내용 】

❍ 은평구와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했을 때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은평구의 경우

❍ 병이 ’13. 3. 5. 은평구 소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대수선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자진신고 납부기간(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3,173,7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증축·대수선·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은평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납세의무자 8명(법인 포함)이 증축·대수선·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계 7,429,61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증축·대수선·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총괄표(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명, 건, 원)

납세의무자 수	미부과건수	원인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8	8	증축(2), 대수선(4), 임시건축물(2)	**7,429,610**	5,320,810	2,108,800

나. 송파구의 경우

❍ 정이 '16. 8. 12. 송파구 소재 건축물에 49.05㎡ 증축과 대수선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자진신고 납부기간(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2,837,8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 "증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송파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납세의무자 3명이 증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등 계 4,954,36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증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총괄표(송파구)

(2017. 1. 10. 기준, 단위 : 명, 건, 원)

납세의무자 수	미부과건수	원인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3	4	증축(3), 대수선(1)	**4,954,360**	3,606,320	1,348,040

【조치할 사항】

❍ **은평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1〕 "증축·대수선·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은평구)"상의 취득세 등 계 7,429,61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2〕 "증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송파구)"상의 취득세 등 계 4,954,36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별표 1]

증축·대수선·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취득일 (존치기간)	과세물건	원인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8명				**7,429,610**	**5,320,810**	**2,108,800**
1	-	2013.03.05.	은평구	대수선	3,173,750	2,001,980	1,171,770
2	-	2016.07.11.	은평구	대수선	1,271,040	1,042,950	228,090
3	-	2016.09.12.	은평구	대수선	1,003,040	836,000	167,040
4	-	2013.01.30.	은평구	대수선	166,810	104,540	62,270
5	-	2012.04.30.	은평구	증축 (95.08)	395,460	235,530	159,930
6	-	2015.12.22.	은평구	증축 (24.19)	329,650	256,330	73,320
7	-	2015.02.06. ~2017.11.05.	은평구	임시건축물 (180)	988,520	764,280	224,240
8	-	2015.12.21. ~2018.12.01.	은평구	임시건축물 (45)	101,340	79,200	22,140

[별표 2]

증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송파구)

(2017. 1. 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취득일	과세물건	원인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3명				**4,954,360**	**3,606,320**	**1,348,040**
1	-	2016.08.16.	송파구	대수선	1,369,960	1,134,720	235,240
2		2016.08.16.	송파구	증축 (49.05)	1,467,890	1,220,500	247,390
3	-	2012.04.05.	송파구	증축 (74.75)	1,486,130	876,330	609,800
4	-	2012.07.01.	송파구	증축 (34.5)	630,380	374,770	255,610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8,718,990원	-	

제 목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무 외 11)

【 지적내용 】

❍ 은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건축물을 신·증축하여(건축허가 유무를 불문함)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13. 3. 8. 무가 은평구 소재 건축물(연면적 : 594.4㎡)에 건축물 44㎡를 무단으로 증축한 후, 자진신고 납부기간(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계 872,11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납세의무자 12명(법인 포함)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계 8,718,99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 1. 10. 기준, 단위 : 명, 건, 원)

납세의무자 수	미부과건수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12	12	**8,718,990**	6,634,830	2,084,160

【 조치할 사항 】

❍ **은평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상의 취득세 등 계 8,718,99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별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2017. 1. 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적발일	과세물건	면적	합계	취득세 등	가산세
	12명				**8,718,990**	**6,634,830**	**2,084,160**
1	-	2013.03.08.	은평구	44.00	872,110	551,840	320,270
2	-	2013.04.23.	은평구	77.86	1,014,620	642,990	371,630
3	-	2013.07.19.	은평구	30.00	579,610	376,250	203,360
4	-	2015.05.07.	은평구	64.00	703,510	519,050	184,460
5	-	2015.08.11.	은평구	30.00	354,390	267,280	87,110
6	-	2015.10.02.	은평구	74.84	842,080	642,340	199,740
7	-	2015.11.03.	은평구	60.00	695,350	534,570	160,780
8	-	2016.11.02.	은평구	68.00	714,770	605,950	108,820
9	-	2016.11.02.	은평구	120.00	617,260	523,290	93,970
10	-	2016.11.02.	은평구	26.40	155,460	131,800	23,660
11	-	2016.11.02.	은평구	47.60	959,880	813,740	146,140
12	-	2016.11.02.	은평구	60.00	1,209,950	1,025,730	184,220

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송파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246,021,860원	3	

제 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기 외 10)

【 지적내용 】

❍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20조,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해당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관내 ㈜C의 주주인 기와 특수관계인인 경의 주식비율이 당초 48.17%에서 '14. 12. 31. 경이 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50.44%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C의 부동산 등 자산가액 중 과점주주 비율(50.44%)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210,938,58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11개 사업소의 과점주주가 2012년~2014년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 246,021,86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 2.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수	미부과건수	주식취득연도	취득세 등		
			계	본세	가산세
11	11	2012~2014	**246,021,860**	173,489,700	72,532,160

【 조치할 사항 】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2.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상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 계 246,021,86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명세

(2017. 2. 10. 기준, 단위 : 원)

연번	과점주주	소유주식			취득세 등 누락세액		
		법인명	주식변동내역				
			주식 취득일	과점(증가)비율	계	본세	가산세
	계				246,021,860	173,489,700	72,532,160
1	-, -	-	'14.12.31.	50.44% (48.17%→50.44%)	210,938,580	151,164,750	59,773,830
2	-	-	'12.08.24.	55% (50%→55%)	13,821,840	8,270,120	5,551,720
3	-, -	-	'13.06.30.	100% (0%→100%)	5,528,710	3,502,960	2,025,750
4	-	-	'14.04.30.	100% (0%→100%)	3,394,880	2,283,350	1,111,530
5	-, -, -	-	'14.02.07.	20.5% (79.5%→100%)	3,529,460	2,334,770	1,194,690
6	-, -	-	'14.03.24.	20% (80%→100%)	1,800,580	1,241,870	558,710
7	-, -	-	'14.11.14.	6% (88%→94%)	1,682,930	1,191,560	491,370
8	-, -	-	'12.05.14.	5% (60%→65%)	680,130	403,960	276,170
9	-, -	-	'14.03.24.	36% (64%→100%)	530,730	354,250	176,480
10	-, -	-	'14.11.25.	15% (85%→100%)	204,320	143,510	60,810
11	-, -	-	'13.12.31.	1.1% (98.52%→99.62%)	3,909,700	2,598,600	1,311,100

No. 7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송파구 세무2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16,167,970원	-	

제 목	기계장비 과세표준 누락에 대한 취득세 등 부족징수((주)D 외 4)

【 지적내용 】

❍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10조, 제20조,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 기계장비를 취득한 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선적비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관내 ㈜D가 '12. 11. 14.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후 '12. 11. 21. 이 건 타워크레인 취득가격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5,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 '17년 1월 감사기간 중 ㈜D의 법인장부(기계장치 계정별원장)를 확인한 결과,

이 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구입하면서 80,000,000원을 지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타워크레인 마스트 구입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 4,430,200원(가산세 포함)을 부족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기계장비 취득세 등 부족징수 명세”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5개 사업주가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계 16,167,9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기계장비 취득세 등 부족징수 명세 총괄표

(2017. 2.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수	미부과건수	취득연도	취득세 등		
			계	본세	가산세
5	6	2012～2015	**16,167,970**	10,833,190	5,334,780

【 조치할 사항 】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2.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기계장비 취득세 등 부족징수 명세”와 같이 과소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계 16,167,97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별표]

기계장비 취득세 등 부족징수 명세

(2017. 2. 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취득일	차량번호	누락 과세표준액	취득세 등		
					계	본세	가산세
	5개 사업주				**16,167,970**	**10,833,190**	**5,334,780**
1	-	2012.11.14.	서울	80,000,000	4,430,200	2,720,000	1,710,200
2	-	2013.04.17.	서울	9,653,000	488,470	328,190	160,280
3	-	2013.06.25.	서울	120,000,000	5,987,120	4,080,000	1,907,120
4	-	2013.10.07.	서울	90,000,000	4,396,700	3,060,000	1,336,700
5	-	2013.10.18.	서울	10,000,000	493,510	340,000	153,510
6	-	2015.09.30	서울	8,970,890	371,970	305,000	66,970

No. 8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296,834,820원	4	

제 목	종교단체 토지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E)

【 지적내용 】

❍ 은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13. 7. 19. E가 ○○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평구 소재 토지 2,311.9㎡를 4,766,445,001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13. 7. 30. 취득세 등 계 219,256,470원과 2015년, 2016년 재산세 등 계 30,830,020원(구세분

재산세 15,658,190원 미포함)을 면제하였으나,

- 해당 종교단체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진신고 납부기간(30일)이 지났음에도 E에 대해 취득세 등 계 266,004,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감사가 시작된 이후 '16. 12. 27.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한 후 신고

- 또한, 2015년, 2016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재산세 등 계 30,830,020원(구세분 재산세 15,658,190원 미포함)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취득세 등 미징수 내역('16. 12. 27. 기준) : **계 266,004,800원**

세 목	본 세	가산세	합 계
합 계	219,256,470	46,748,330	266,004,800
① 취득세	190,657,800	45,624,410	236,282,210
농어촌특별세	9,532,890	374,640	9,907,530
지방세교육세	19,065,780	749,280	19,815,060

※ 재산세 등 미징수 내역('16. 12. 27. 기준) : **계 30,830,020원(구세분 미포함)**

년 도	특별시분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 계
합 계	15,658,170	8,908,580	6,263,270	30,830,020
② 2015년	7,513,510	4,277,560	3,005,410	14,796,480
③ 2016년	8,144,660	4,631,020	3,257,860	16,033,540

【조치할 사항】

❍ **은평구청장은**

- 종교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E가 2016. 12. 27. 기한 후 신고한 취득세 등 계 266,004,800원과,
- 2015년, 2016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재산세 등 계 30,830,020원(구세분 재산세 15,658,190원 미포함)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제도 등을 마련하여 감면된 지방세가 부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9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6,073,270원	1	

제 목	종교단체 주택의 감면 취득세 등 부족징수(F)

【 지적내용 】

❍ 은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와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13. 7. 11. F가 ○○ 목적으로 은평구 소재 주택(토지 231.1㎡, 건물 181.48㎡)을 1,120,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13. 7. 16. 취득세 등 계 51,520,000원을 면제하였으며,

- 해당 종교단체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6. 4. 11. 위 주택의 일부인 2층 81.98㎡를 임대하여 '16. 6. 8. 취득세 등 계 13,514,21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시가표준액 안분 착오로 부족세액이 있었음에도 F에 대해 부족 징수된 취득세 등 계 6,073,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취득세 등 부족 징수 내역('17. 1. 10. 기준) : **계 6,073,270원**

세 목	본 세	가산세	합 계
합 계	5,510,080	563,190	6,073,270
취득세	4,722,930	550,210	5,273,140
농어촌특별세	314,860	5,190	320,050
지방세교육세	472,290	7,790	480,080

【 조치할 사항 】

❍ **은평구청장은**

- 종교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부족세액이 있었던 F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 계 6,073,27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10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283,386,000원	2	

제 목	학교법인 부동산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G)

【 지적내용 】

❍ 은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와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13. 5. 31. G가 ○○ 목적으로 은평구 소재 임야 43,921.1㎡와 같은 구 임야 6,015㎡를 5,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13. 10. 22. 취득세 등 계 230,000,000원을 면제하였으나,

- G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진신고 납부기간(30일)이 지났음에도 G에 대해 취득세 등 계 283,386,0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취득세 등 미징수 내역('17. 1. 10. 기준) : **계 283,386,000원**

세 목	본 세	가산세	합 계
합 계	230,000,000	53,386,000	283,386,000
취득세	200,000,000	51,640,000	251,640,000
농어촌특별세	10,000,000	582,000	10,582,000
지방세교육세	20,000,000	1,164,000	21,164,000

【조치할 사항】

❍ **은평구청장은**

- 학교법인이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G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 계 283,386,00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제도 등을 마련하여 감면된 지방세가 부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11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송파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12,420,050원	1	

제 목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취득세 등 미징수(H)

【 지적내용 】

❍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와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13. 9. 26. H가 ○○ 목적으로 송파구 소재 부동산(토지 829.2㎡, 건축물 1,486.878㎡)을 증여로 취득(시가표준액 : 5,744,519,482원)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 계 229,780,760원을 면제하였으나,

- 해당 종교단체가 취득일부터 위 부동산 1층 일부(토지 30.38㎡, 건축물 65.25㎡)를 까페로 운영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H에 대해 취득세 등 계 12,420,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취득세 등 미징수 내역('17. 1. 10. 기준) : **계 12,420,050원**

세 목	본 세	가산세	합 계
합 계	8,576,810	3,843,240	12,420,050
취득세	7,504,710	3,456,660	10,961,370
농어촌특별세	428,840	154,630	583,470
지방세교육세	643,260	231,950	875,210

【 조치할 사항 】

❍ **송파구청장은**

- 종교단체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H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 계 12,420,05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12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송파구 세무1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감액	10,194,810원	-	

제 목	재산세 세율 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징수(I)

【 지적내용 】

❍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105조, 제114조,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따르면

- 재산세 과세대상은 매년 6. 1.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송파구는 관내 부동산(토지 176.9㎡, 건축물 249.01㎡)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2013년~2016년까지 재산세를 주택 세율로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 그러나, 위 부동산은 경기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 I가 '12. 10. 19. 취득하여 서울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로 부과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송파구에서는 '17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대해 2013년~2016년 재산세를 사실상의 현황으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표 1〕과 같이 재산세 등 계 3,494,480원(구세분 재산세 959,420원 미포함)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 그 결과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 〔표 2〕와 같이 재산세 등 계 6,700,330원

(구세분 재산세 2,685,170원 미포함)보다 재산세 등 계 3,205,850원을 부족하게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주택세율 적용 재산세

○ 재산세(주택) 부과세액 (단위 : 원)

년 도	특별시분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합 계	959,380	2,126,800	24,540	383,760	3,494,480
2013년	223,200	500,620	7,300	89,280	820,400
2014년	237,140	526,660	6,680	94,860	865,340
2015년	246,600	544,300	5,840	98,640	895,380
2016년	252,440	555,220	4,720	100,980	913,360

☞ 구세분 재산세 959,420원 미포함

[표 2] 건축물·토지세율 적용 재산세

① 재산세(건축물) 부과세액 (단위 : 원)

년 도	특별시분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합 계	103,950	116,430	42,290	41,570	304,240
2013년	31,300	35,050	13,120	12,520	91,990
2014년	28,410	31,820	11,740	11,360	83,330
2015년	24,530	27,480	9,870	9,810	71,690
2016년	19,710	22,080	7,560	7,880	57,230

☞ 구세분 재산세 103,970원 미포함

② 재산세(토지) 부과세액 (단위 : 원)

년 도	특별시분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 계
합 계	2,581,190	2,782,440	1,032,460	6,396,090
2013년	605,830	658,770	242,330	1,506,930
2014년	629,970	681,310	251,990	1,563,270
2015년	654,120	703,840	261,640	1,619,600
2016년	691,270	738,520	276,500	1,706,290

☞ 구세분 재산세 2,581,200원 미포함

【 조치할 사항 】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표 1〕 “주택세율 적용 재산세”상의 재산세 등 계 3,494,480원(구세분 재산세 959,420원 미포함)을 부과취소하고,

- 건축물과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 〔표 2〕 “건축물·토지세율 적용 재산세”상의 재산세 등 계 6,700,330원(구세분 재산세 2,685,170원 미포함)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No. 13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행정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5,846,390원	-	

제 목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주)J 외 20)

【 지적내용 】

❍ 은평구와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 제80조~제83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매년 7. 1. 현재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은평구의 경우

❍ ㈜J가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 연면적 513㎡에 대하여 2012년과 2013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계 395,4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14개 사업주가 2012년~2016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계 4,259,2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재산분)		
			계	본세	가산세
14	23	2012~2016	**4,259,240**	2,855,000	1,404,240

나. 송파구의 경우

❍ 신이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 연면적 512㎡에 대하여 2012년과 2013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계 420,28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7개 사업주가 2012년~2016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계 1,587,1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송파구)

(2017. 2.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재산분)		
			계	본세	가산세
7	9	2012~2016	**1,587,150**	1,117,000	470,150

【 조치할 사항 】

❍ 은평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1〕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상의 주민세 재산분 계 4,259,24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재산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017. 2. 10. 기준으로 간정된 〔별표 2〕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상의 주민세 재산분 계 1,587,15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재산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별표 1]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도	연면적	주민세(재산분)		
				계	본세	가산세
	14개 사업주			**4,259,240**	**2,855,000**	**1,404,240**
1	-	2012	513	204,740	128,250	76,490
2		2013	513	190,700	128,250	62,450
3	-	2012	377	159,890	94,250	65,640
4		2013	377	149,570	94,250	55,320
5	-	2013	448	177,740	112,000	65,740
6	-	2012	491	208,240	122,750	85,490
7		2013	491	194,800	122,750	72,050
8	-	2012	420	178,130	105,000	73,130
9		2013	420	166,630	105,000	61,630
10	-	2015	556	190,150	139,000	51,150
11	-	2013	709	281,290	177,250	104,040
12		2014	709	261,880	177,250	84,630
13	-	2012	358	151,000	89,500	61,500
14		2013	358	142,030	89,500	52,530
15		2014	358	132,980	89,500	43,480
16	-	2012	361	153,100	90,250	62,850
17		2013	361	143,220	90,250	52,970
18		2014	361	133,340	90,250	43,090
19	-	2013	439	174,170	109,750	64,420
20	-	2016	366	114,240	91,500	22,740
21	-	2015	462	158,000	115,500	42,500
22	-	2015	495	169,290	123,750	45,540
23	-	2016	1,477	424,110	369,250	54,860

[별표 2]

주민세 재산분 미부과 명세(송파구)

(2017. 2. 10. 기준, 단위 :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도	연면적	주민세(재산분)		
				계	본세	가산세
	7개 사업주			**1,587,150**	**1,117,000**	**470,150**
1	-	2012	512	217,150	128,000	89,150
2		2013	512	203,130	128,000	75,130
3	-	2014	479	176,930	119,750	57,180
4	-	2015	524	179,200	131,000	48,200
5	-	2015	455	155,610	113,750	41,860
6	-	2015	463	158,340	115,750	42,590
7		2016	463	145,600	115,750	29,850
8	-	2015	649	221,950	162,250	59,700
9	-	2016	411	129,240	102,750	26,490

No. 14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행정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39,672,870원	-	

제 목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K 외 5)

【 지적내용 】

❍ 은평구와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 제84조의2~제84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 구 「지방세법」 제84조의4(2016. 1. 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 종업원의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2012년~2015년 귀속 급여)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16년 귀속 급여)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를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은평구의 경우

❍ K가 2013년 4월분 급여 계 158,536,351원을 종업원 52명에게 지급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 계 612,5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3개 사업주가 2013년 4월~2016년 6월 귀속 주민세 종업원분 계 10,288,4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3	10	2012.4. ~ 2016.6.	**10,288,440**	7,552,590	2,735,850

나. 송파구의 경우

❍ L이 2014년 3월분 급여 계 206,546,549원을 종업원 180명에게 지급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 계 1,550,77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3개 사업주가 2014년 3월~2016년 12월 귀속 주민세 종업원분 계 29,384,43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송파구)

(2017. 2.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3	24	2014.3. ~ 2016.12.	**29,384,430**	21,682,940	7,701,490

【 조치할 사항 】

❍ 은평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84조의 6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1〕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상의 주민세 종업원분 계 10,288,44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84조의 6 규정에 따라 2017. 2.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2〕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상의 주민세 종업원분 계 29,384,43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별표 1]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명,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월	종업원수	과세급여 총액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3개 사업주				**10,288,440**	**7,552,590**	**2,735,850**
1	-	2013.04	52	153,261,851	612,540	383,150	229,390
2		2013.05	53	375,251,351	1,491,040	938,120	552,920
3	-	2014.06	53	162,925,280	1,201,150	814,620	386,530
4		2015.04	57	154,498,980	1,068,340	772,490	295,850
5	-	2016.01	49	129,768,384	840,490	648,840	191,650
6		2016.02	48	183,370,691	1,181,360	916,850	264,510
7		2016.03	49	135,446,710	866,100	677,230	188,870
8		2016.04	49	170,539,945	1,083,070	852,690	230,380
9		2016.05	49	131,957,368	831,910	659,780	172,130
10		2016.06	48	177,764,737	1,112,440	888,820	223,620

[별표 2]

주민세 종업원분 미부과 명세(송파구)

(2017. 2. 10. 기준, 단위 : 명,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월	종업원수	과세급여 총액	주민세(종업원분)		
					계	본세	가산세
	3개 사업주				**29,384,430**	**21,682,940**	**7,701,490**
1	-	2014.03	180	206,564,549	1,550,770	1,032,820	517,950
2		2014.04	178	206,276,998	1,539,630	1,031,380	508,250
3		2014.05	168	196,983,959	1,461,400	984,910	476,490
4	-	2014.09	89	226,737,201	1,640,310	1,133,680	506,630
5		2014.10	84	215,871,348	1,551,990	1,079,350	472,640
6		2014.11	87	203,571,977	1,453,480	1,017,850	435,630
7		2014.12	79	209,199,674	1,484,560	1,045,990	438,570
8		2015.01	79	207,354,928	1,462,770	1,036,770	426,000
9		2015.03	81	222,545,315	1,549,230	1,112,720	436,510
10		2015.05	80	221,007,586	1,518,630	1,105,030	413,600
11		2015.06	84	217,717,963	1,485,900	1,088,580	397,320
12		2015.07	79	228,136,890	1,546,410	1,140,680	405,730
13	-	2016.01	30	137,718,866	900,660	688,590	212,070
14		2016.02	30	140,225,866	912,220	701,120	211,100
15		2016.03	30	135,610,466	875,700	678,050	197,650
16		2016.04	30	137,148,866	879,650	685,740	193,910
17		2016.05	30	140,048,866	891,740	700,240	191,500
18		2016.06	30	133,048,866	840,980	665,240	175,740
19		2016.07	30	132,848,866	833,740	664,240	169,500
20		2016.08	30	132,848,866	827,170	664,240	162,930
21		2016.09	30	125,925,766	778,770	629,620	149,150
22		2016.10	30	129,002,686	791,810	645,010	146,800
23		2016.11	30	129,002,686	785,620	645,010	140,610
24		2016.12	30	301,217,754	1,821,290	1,506,080	315,210

No. 15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행정과	2017 (2017.3.)	시정요구	추징	14,187,500원	-	

제 목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주)M 외 206)

【 지적내용 】

❍ 은평구와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4조~제76조, 제78조, 제79조 규정에 따르면

-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매년 8. 1.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사업소의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표준세율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은평구의 경우

❍ ㈜M은 '12. 8. 1. 기준으로 은평구에 50,000천 원의 자본금과 2명의 종업원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임에도,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은평구 관내 27개 사업주에게 39건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2,437,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법인균등분)		
			계	본세	지방교육세
27	39	2012~2016	2,437,500	1,950,000	487,500

나. 송파구의 경우

❍ ㈜N은 ’12. 8. 1. 기준으로 송파구에 100,000천 원의 자본금과 4명의 종업원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임에도,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6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송파구 관내 180개 사업주에게 187건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11,7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송파구)

(2017. 1.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귀속연도	주민세(법인균등분)		
			계	본세	지방교육세
180	187	2012~2016	11,750,000	9,400,000	2,350,000

【 조치할 사항 】

❍ **은평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별표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은평구)” 상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2,437,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별표 2〕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송파구)” 상의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계 11,7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주민세 법인균등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별표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은평구)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연도	주민세(법인균등분)		
			계	본세	지방교육세
	27개 사업주		11,750,000	9,400,000	2,350,000
1	-	2012	62,500	50,000	12,500
2	-	2012	62,500	50,000	12,500
3	-	2012	62,500	50,000	12,500
4	-	2012	62,500	50,000	12,500
5	-	2013	62,500	50,000	12,500
6	-	2013	62,500	50,000	12,500
7	-	2013	62,500	50,000	12,500
8	-	2013	62,500	50,000	12,500
9	-	2013	62,500	50,000	12,500
10	-	2013	62,500	50,000	12,500
11	-	2013	62,500	50,000	12,500
12	-	2013	62,500	50,000	12,500
13	-	2013	62,500	50,000	12,500
14	-	2013	62,500	50,000	12,500
15	-	2013	62,500	50,000	12,500
16	-	2013	62,500	50,000	12,500
17	-	2013	62,500	50,000	12,500
18	-	2013	62,500	50,000	12,500
19	-	2013	62,500	50,000	12,500
20	-	2014	62,500	50,000	12,500
21	-	2014	62,500	50,000	12,500
22	-	2014	62,500	50,000	12,500
23	-	2014	62,500	50,000	12,500
24	-	2014	62,500	50,000	12,500
25	-	2015	62,500	50,000	12,500
26	-	2015	62,500	50,000	12,500
27	-	2015	62,500	50,000	12,500
28	-	2015	62,500	50,000	12,500
29	-	2015	62,500	50,000	12,500
30	-	2015	62,500	50,000	12,500
31	-	2015	62,500	50,000	12,500
32	-	2015	62,500	50,000	12,500
33	-	2015	62,500	50,000	12,500
34	-	2015	62,500	50,000	12,500
35	-	2015	62,500	50,000	12,500
36	-	2015	62,500	50,000	12,500
37	-	2016	62,500	50,000	12,500
38	-	2016	62,500	50,000	12,500
39	-	2016	62,500	50,000	12,500

[별표 2]

주민세 법인균등분 미부과 명세(송파구)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연도	주민세(법인균등분)		
			계	본세	지방교육세
	180개 사업주		2,437,500	1,950,000	487,500
1	-	2012	62,500	50,000	12,500
2	-	2012	62,500	50,000	12,500
3	-	2012	62,500	50,000	12,500
4	-	2012	62,500	50,000	12,500
5	-	2012	62,500	50,000	12,500
6	-	2012	62,500	50,000	12,500
7	-	2012	62,500	50,000	12,500
8	-	2012	62,500	50,000	12,500
9	-	2012	62,500	50,000	12,500
10	-	2012	62,500	50,000	12,500
11	-	2012	62,500	50,000	12,500
12	-	2012	62,500	50,000	12,500
13	-	2012	62,500	50,000	12,500
14	-	2012	62,500	50,000	12,500
15	-	2012	62,500	50,000	12,500
·	·	2012	62,500	50,000	12,500
·	·	2012	62,500	50,000	12,500
·	·	2012	62,500	50,000	12,500
·	·	2012	62,500	50,000	12,500
·	·	2012	62,500	50,000	12,500
170	-	2016	62,500	50,000	12,500
171	-	2016	62,500	50,000	12,500
172	-	2016	62,500	50,000	12,500
173	-	2016	62,500	50,000	12,500
174	-	2016	62,500	50,000	12,500
175	-	2016	125,000	100,000	25,000
176	-	2016	62,500	50,000	12,500
177	-	2016	62,500	50,000	12,500
178	-	2016	62,500	50,000	12,500
179	-	2016	62,500	50,000	12,500
180	-	2016	62,500	50,000	12,500
181	-	2016	62,500	50,000	12,500
182	-	2016	62,500	50,000	12,500
183	-	2016	62,500	50,000	12,500
184	-	2016	62,500	50,000	12,500
185	-	2016	62,500	50,000	12,500
186	-	2016	62,500	50,000	12,500
187	-	2016	62,500	50,000	12,500

No. 16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은평구 세무2과 송파구 세무2과 서울시 세무과	2017 (2017.3.)	시정요구 통보	추징	539,437,300원	4	
제 목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주)O 외 21)					

【 지적내용 】

❍ 은평구와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표준세율로 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일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은평구의 경우

❍ ㈜O는 '12. 11. 30. 서대문세무서로부터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61,823,150원을 '12. 12. 31. 납부기한으로 경정결정 받았으나, 납부기한인 '12. 12. 31.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 10,089,52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사업연도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 19,893,79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국세청 등 통보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계	본세	가산세
1	4	2012.12.	**19,893,790**	12,271,980	7,621,810

나. 송파구의 경우

❍ ㈜P는 '13. 5. 20. 국세청으로부터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9,407,050원을 '13. 6. 15. 납부기한으로 경정결정 받았으나, 납부기한인 '13. 6. 15.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 1,488,6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13. 6월~'15. 9월까지 국세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21개 사업주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 519,543,51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송파구)

(2017. 2.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국세청 등 통보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계	본세	가산세
21	38	2013.6. ~ 2015.9.	**519,543,510**	340,275,360	179,268,150

【 조치할 사항 】

❍ 은평구청장은

- 구「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상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 19,893,79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청장은

- 구「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규정에 따라 2017. 2.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상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 519,543,51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세무과장은

- 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매월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가 미부과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지방소득세 부과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국세청 등 통보월	법인세 결정금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계	본세	가산세
	1개 사업주				**19,893,790**	**12,271,980**	**7,621,810**
1	-	2007	2012.12.	61,823,150	10,089,520	6,182,310	3,907,210
2	-	2008	2012.12.	10,553,866	1,588,330	1,055,380	532,950
3	-	2010	2012.12.	1,655,220	270,120	165,520	104,600
4	-	2011	2012.12.	48,687,780	7,945,820	4,868,770	3,077,050

[별표 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송파구)

(2017. 2. 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국세청 등 통보월	법인세 결정금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계	본세	가산세
	21개 사업주				**519,543,510**	**340,275,360**	**179,268,150**
1	-	2008	2013.06.	9,407,050	1,488,650	940,700	547,950
2	-	2008	2013.07.	17,886,010	2,821,870	1,788,600	1,033,270
3	-	2009	2013.09.	26,704,090	4,163,420	2,670,400	1,493,020
4	-	2010	2013.09.	39,062,350	6,090,190	3,906,230	2,183,960
5	-	2011	2013.11.	29,595,180	4,559,120	2,959,510	1,599,610
6	-	2010	2013.11.	7,601,000	1,170,930	760,000	410,830
7	-	2008	2013.11.	1,188,712,140	183,121,090	118,871,210	64,249,880
8	-	2009	2013.11.	40,130,800	6,182,140	4,013,080	2,169,060
9	-	2011	2013.11.	2,146,180	328,730	214,610	114,120
10	-	2008	2013.11.	7,170,360	1,104,570	717,030	387,540
11	-	2009	2013.11.	13,968,340	2,151,810	1,396,830	754,980
12	-	2010	2013.11.	87,480,170	13,476,300	8,748,010	4,728,290
13	-	2012	2013.11.	8,926,030	1,375,050	892,600	482,450
14	-	2007	2013.11.	1,183,740	181,310	118,370	62,940
15	-	2008	2013.11.	1,088,670	166,740	108,860	57,880
16	-	2009	2013.11.	1,326,840	203,230	132,680	70,550
17	-	2010	2013.11.	1,619,600	248,080	161,960	86,120
18	-	2011	2013.11.	1,712,060	262,240	171,200	91,040
19	-	2009	2013.11.	2,764,910	428,820	276,490	152,330
20	-	2010	2013.11.	31,803,850	4,932,760	3,180,380	1,752,380
21	-	2011	2013.11.	3,521,030	546,100	352,100	194,000
22	-	2010	2013.12.	104,468,850	16,002,520	10,446,880	5,555,640
23	-	2011	2013.12.	71,555,540	10,960,870	7,155,550	3,805,320
24	-	2012	2013.12.	110,646,970	16,948,880	11,064,690	5,884,190
25	-	2009	2013.12.	73,291,200	11,226,740	7,329,120	3,897,620
26	-	2010	2013.12.	42,523,890	6,470,410	4,252,380	2,218,030
27	-	2004	2013.12.	78,093,920	11,962,410	7,809,390	4,153,020
28	-	2007	2013.12.	363,201,030	55,264,660	36,320,100	18,944,560
29	-	2008	2013.12.	549,152,660	83,559,050	54,915,260	28,643,790
30	-	2009	2013.12.	312,718,740	47,583,270	31,271,870	16,311,400
31	-	2012	2014.02.	66,146,010	9,953,650	6,614,600	3,339,050
32	-	2012	2014.03.	13,498,410	2,031,230	1,349,840	681,390
33	-	2013	2014.05.	3,691,350	95,730	64,000	31,730
34	-	2012	2014.06.	9,580,290	116,830	78,630	38,200
35	-	2011	2014.09.	3,944,840	562,390	387,890	174,500
36	-	2013	2015.09.	26,477,430	3,537,100	2,647,740	889,360
37	-	2010	2015.09.	18,984,290	2,536,090	1,898,420	637,670
38	-	2011	2015.09.	42,881,540	5,728,530	4,288,150	1,440,380

No. 17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송파구 세무2과 서울시 세무과	2017 (2017.3.)	시정요구 통보	추징	11,523,190원	1	

제 목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미부과(임 외 6)

【 지적내용 】

❍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제93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표준세율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송파구는 임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3. 10. 31. 당초 48,318,768원에서 106,515,069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계 7,870,58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부과 명세"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7명의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계 11,523,19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

(2017. 1.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 (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국세청 등 통보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계	본세	가산세
7	7	2012.05.~2014.08.	**11,523,190**	8,698,730	2,824,460

【조치할 사항】

❍ **송파구청장은**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미부과 명세"상의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계 11,523,19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세무과장은**

- 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매월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가 미부과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지방소득세 부과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미부과 명세

(2017. 1. 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국세청 등 통보월	소득세 결정금액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계	본세	가산세
	7명				**11,523,190**	**8,698,730**	**2,824,460**
1	-	2012	2013.12.	106,515,060	7,870,580	5,829,630	2,040,950
2	-	2011	2013.05.	83,635,150	571,690	532,550	39,140
3	-	2012	2013.08.	14,587,240	191,410	179,870	11,540
4	-	2012	2013.10.	2,152,500	300,480	215,250	85,230
5	-	2011	2013.10.	63,863,540	557,130	406,700	150,430
6	-	2012	2013.12.	70,122,870	1,291,720	959,110	332,610
7	-	2013	2014.08.	5,756,200	740,180	575,620	164,560

No. 18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송파구 세무2과 은평구 세무2과 서울시 세무과	2017 (2017.3.)	시정요구 통보	추징	436,993,500원	3	
제 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주)Q 외 49)					

【 지적내용 】

❍ 송파구와 은평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86조, 제89조,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 규정에 따르면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가. 송파구의 경우

❍ ㈜Q는 '08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3,550,037,241원을 '12년 7월 지급하면서 소득세 1,175,431,65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12. 8. 10.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 129,297,47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47개 사업주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 435,626,81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송파구)

(2017. 1.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국세청 등 통보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계	본세	가산세
47	73	2012.02.~2015.12.	**435,626,810**	396,024,660	39,602,150

나. 은평구의 경우

❍ ㈜R은 ’14년 4월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14년 11월 수정신고하면서 소득세 7,293,42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인 ’14. 12. 10.까지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 802,27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와 같이 ’17년 1월 감사일 현재 관내 3개 사업주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 1,366,69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 총괄표(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건, 원)

납세의무자(사업주) 수	미부과건수	국세청 등 통보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계	본세	가산세
3	3	2013.6. ~ 2016.5.	**1,366,690**	1,242,450	124,240

【 조치할 사항 】

❍ 송파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및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송파구)”상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 435,626,81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또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청장은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및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규정에 따라 2017. 1. 10. 기준으로 산정된 〔별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은평구)”상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계 1,366,690원(가산세 포함)과 추징시점까지의 가산세를 고려한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서울시 세무과장은

- 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매월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가 미부과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지방소득세 부과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송파구)

(2017. 1. 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원	국세청 등 통보월	소득세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계	본세	가산세
	47개 사업주				**435,626,810**	**396,024,660**	**179,268,150**
1	-	2008.01.	2012.10.	1,175,431,650	129,297,470	117,543,160	11,754,310
2	-	2009.02.	2012.10.	907,431,680	99,817,470	90,743,160	9,074,310
3	-	2010.02.	2012.10.	61,755,190	6,793,060	6,175,510	617,550
4	-	2011.02.	2012.10.	363,464,320	39,981,070	36,346,430	3,634,640
5	-	2011.11.	2012.02.	18,040,620	1,984,460	1,804,060	180,400
6	-	2011.12.	2012.05.	7,132,000	784,520	713,200	71,320
7	-	2012.03.	2012.07.	22,136,240	2,434,980	2,213,620	221,360
8	-	2011.02.	2013.01.	107,400,000	11,814,000	10,740,000	1,074,000
9	-	2012.11.	2013.02.	11,439,360	1,100,000	1,000,000	100,000
10	-	2013.02.	2013.05.	14,973,960	1,647,120	1,497,390	149,730
11	-	2012.12.	2013.05.	23,540,990	2,589,490	2,354,090	235,400
12	-	2013.02.	2013.05.	45,085,320	4,959,380	4,508,530	450,850
13	-	2012.02.	2013.06.	9,173,370	1,009,060	917,330	91,730
14	-	2013.05.	2013.09.	5,118,640	563,040	511,860	51,180
15	-	2008.01.	2013.09.	7,596,130	835,570	759,610	75,960
16	-	2009.01.	2013.09.	10,301,670	1,133,170	1,030,160	103,010
17	-	2012.01.	2013.09.	10,366,410	1,140,300	1,036,640	103,660
18	-	2010.01.	2013.09.	12,482,470	1,373,060	1,248,240	124,820
19	-	2011.01.	2013.09.	13,930,080	1,532,300	1,393,000	139,300
20	-	2013.06.	2013.10.	6,730,780	740,370	673,070	67,300
21	-	2011.02.	2013.10.	7,653,620	841,890	765,360	76,530
22	-	2010.01.	2013.11.	9,858,900	1,084,470	985,890	98,580
23	-	2012.01.	2013.11.	15,470,260	1,701,720	1,547,020	154,700
24	-	2008.01.	2013.11.	20,238,140	2,226,190	2,023,810	202,380
25	-	2009.01.	2013.11.	37,219,790	4,094,160	3,721,970	372,190
26	-	2011.01.	2013.11.	62,290,930	6,843,080	6,220,990	622,090
27	-	2010.01.	2013.11.	101,640,780	11,180,470	10,164,070	1,016,400

28	-	2008.01.	2014.02.	7,249,790	797,460	724,970	72,490
29	-	2011.01.	2014.02.	3,447,500	379,220	344,750	34,470
30	-	2011.01.	2014.02.	17,989,410	1,978,830	1,798,940	179,890
31	-	2013.12.	2014.03.	7,458,810	820,460	745,880	74,580
32	-	2013.07.	2014.03.	10,342,940	1,137,710	1,034,290	103,420
33	-	2010.01.	2014.03.	97,853,570	10,103,880	9185,350	918,530
34	-	2013.07.	2014.04.	9,585,780	1,054,420	958,570	95,850
35	-	2011.01.	2014.06.	7,688,550	845,730	768,850	76,880
36	-	2012.02.	2014.06.	8,868,440	975,520	886,840	88,680
37	-	2010.01.	2014.06.	9,163,360	1,007,960	916,330	91,630
38	-	2011.12.	2014.06.	11,801,700	1,298,180	1,180,170	118,010
39	-	2013.02.	2014.07.	2,375,870	261,330	237,580	23,750
40	-	2014.04.	2014.07.	14,590,150	1,479,260	1,344,790	134,470
41	-	2011.01.	2014.08.	9,550,660	1,050,560	955,060	95,500
42	-	2013.02.	2014.10.	30,592,830	3,365,200	3,059,280	305,920
43	-	2014.08.	2014.11.	29,999,330	3,299,920	2,999,930	299,990
44	-	2009.01.	2015.01.	7,139,360	785,320	713,930	71,390
45	-	2012.01.	2015.01.	8,263,380	908,960	826,330	82,630
46	-	2011.01.	2015.01.	52,732,450	5,564,870	5,058,980	505,890
47	-	2012.01.	2015.01.	58,360,750	6,419,670	5,836,070	583,600
48	-	2011.01.	2015.03.	2,375,720	261,320	237,570	23,750
49	-	2013.01.	2015.03.	2,288,220	251,700	228,820	22,880
50	-	2012.01.	2015.03.	2,466,290	271,280	246,620	24,660
51	-	2012.01.	2015.03.	18,415,730	2,025,720	1,841,570	184,150
52	-	2012.01.	2015.03.	73,666,580	8,103,310	7,366,650	736,660
53	-	2014.12.	2015.04.	5,734,040	630,740	573,400	57,340
54	-	2013.08.	2015.06.	5,280,000	580,800	528,000	52,800
55	-	2015.02.	2015.06.	5,754,080	632,940	575,400	57,540
56	-	2015.03.	2015.06.	12,247,810	95,840	87,130	8,710
57	-	2012.04.	2015.07.	5,060,000	556,600	506,000	50,600
58	-	2014.12.	2015.07.	5,708,700	430,550	391,410	39,140
59	-	2012.01.	2015.07.	10,490,150	1,153,910	1,049,010	104,900
60	-	2011.03.	2015.07.	13,509,740	1,486,060	1,350,970	135,090
61	-	2013.01.	2015.07.	18,287,500	2,011,620	1,828,750	182,870

62	-	2015.05.	2015.08.	17,192,230	1,891,140	1,719,220	171,920
63	-	2013.01.	2015.08.	26,840,600	2,952,460	2,684,060	268,400
64	-	2012.01.	2015.08.	29,590,780	3,254,970	2,959,070	295,900
65	-	2009.02.	2015.08.	78,137,590	2,979,370	2,708,520	270,850
66	-	2015.06.	2015.09.	10,000,000	1,100,000	1,000,000	100,000
67	-	2015.06.	2015.09.	11,734,100	1,290,750	1,173,410	117,340
68	-	2014.02.	2015.09.	66,209,370	7,283,020	6,620,930	662,090
69	-	2012.01.	2015.10.	5,207,050	362,750	329,780	32,970
70	-	2015.07.	2015.10.	15,289,430	1,681,830	1,528,940	152,890
71	-	2015.08.	2015.11.	19,124,490	2,103,680	1,912,440	191,240
72	-	2015.09.	2015.12.	13,380,040	1,471,800	1,338,000	133,800
73	-	2014.06.	2015.12.	70,239,340	7,726,320	7,023,930	702,390

[별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부과 명세(은평구)

(2017. 1. 10. 기준, 단위 : 원)

연번	납세의무자	귀속년원	국세청 등 통보월	소득세 원천징수액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계	본세	가산세
	3개 사업주				**1,366,690**	**1,242,450**	**124,240**
1	-	2014.04.	2015.01.	7,293,420	802,270	729,340	72,930
2	-	2015.03.	2016.05.	4,000,000	440,000	400,000	40,000
4	-	2016.03.	2013.06.	1,131,120	124,420	113,110	11,310

No. 19

감사 모범사례

기관·부서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조치방법	금 액		
송파구 세무1과	2017 (2017.3.)	통보	-	-	-	

제 목	적극행정을 통한 취득세 등 추징으로 세수증대 기여

【 사례내용 】

❍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누락세원 발굴을 위하여 「201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2015. 2. 17. 부구청장방침-제0호)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에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인 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S㈜는 2014. 3. 5. 경기도 화성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1. 25. 송파구 소재 토지 14,921㎡를 149,545,468,387원에 취득하여

2015. 1. 2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 계 2,784,157,510원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계 4,094,934,000원을 납부하였다.

- 그러나, 송파구 세무1과 갑, 을, 병은 S㈜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를 2015. 7. 8.~9.과 7. 15.~16. 현장방문 및 2015. 8. 4.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화성시 소재 사무실은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하는 T㈜가 경비 1인을 두고 플리클리닉과 토마토에 대한 시설업무 등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형식상의 본점으로 판단하였다.

- 법인의 사실상 본점 소재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의 대표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T㈜를 방문한 결과, 건물 안내판과 사무실 입구에 S㈜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S㈜의 직원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상 법인 본점을 전입·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11. 25. 취득한 송파구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318,534,090원(가산세 포함)을 2015. 9. 7. 과세 예고하였다.

- S㈜는 2015. 10.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서울시에서 불채택 결정되었다.

❍ 그 결과 송파구는 S㈜에 2016. 1. 10. 취득세 등 5,318,534,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징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송파구청장은**

- 위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됨으로 시장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